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26. 9. 16.~2026. 9. 30.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처분대상

연번	상호	소매인명	영업소 소재지	지정취소일자
1	베이퍼스 노원	김*철	노원구 한글비석로22길 18, 3층	2026.9.10.
2	토마토마트	서*니	노원구 화랑로449-7, 로우폴리스 1층 102호	2026.9.10.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02-2116-3484)